

위로금 지급기준표(제3조제1항 관련)

신체장해등급(노동력 상실률)	지급액(원)
제1급(100) ~ 제3급(100)	20,000,000
제4급(90) ~ 제5급(80)	17,000,000
제6급(70) ~ 제8급(50)	12,000,000
제9급(40) ~ 제10급(30)	7,000,000
제11급(20) ~ 제14급(5)	3,000,000